

도서관과 문고의 연계발전방안

이 용 남

〈한성대학교 문현정보학과 교수〉

1. 서 론

작년도 책의 해를 맞이하여 제기되었던 「독서진 흥법」 제정에 대해 도서관계가 이를 적극 반대하였을 뿐 아니라, 도서관계와 출판계가 그 대안으로 제시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내용을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양측이 견해차이를 보인 가장 큰 논점은, 공공도서관과 문고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법 내용에 어떻게 갖추어지느냐 하는 문제였다. 문고설치를 확대하여 독서환경을 조성한다는 기본취지에 대해서는 도서관계 입장에서도 더할나위 없이 반가운 일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정신은 모든 규모의 도서관 및 독서시설은 가능한 한 하나의 시스템으로 엮어져야 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정신이 반영되어 「도서관 및독서진흥법」 제40조2항과 3항에서 이를 명문화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문고운동의 배경과 의미를 살피고 도서관과 문고가 연계운영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가능한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문고운동의 의미와 현황

1) 문고운동의 의미

우리나라에서 도서관과 관련된 명칭으로 「문고」

라는 이름이 쓰여온 경우는 다음의 두 경우가 있다. 첫째의 경우는 대출문고, 순회문고 등 도서관 관외 봉사의 일환으로 공공도서관에서 주민 가까이에 도서관자료를 비치하여 제공하는 일단의 장서를 일컫는 말이며, 다른 하나의 경우는 도서관이 갖추어야 할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는 있으나 도서관의 일부기능을 수행하는 소규모의 도서관 시설을 일컫는 말이다. 전자의 경우가 「도서관진흥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고유활동의 하나인데 반해, 후자의 경우는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공공도서관과 관련없이 자생적으로 활동해 왔었으나 이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제정으로 도서관과 연계활동이 필요한 시설로서, 바로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문고의 개념이다.

과거에도 농촌문고 등의 이름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우리나라에서 소규모의 독서시설이 문고라는 이름으로 정착되다시피 한 것은 1961년부터 전국적으로 전개된 「마을문고」운동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고운동은 최근에 와서 「작은도서관」 또는 「도서원」이란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는 등 그 이름은 시설의 규모나 운영의 모습만큼이나 다양하다. 그런데 지난 3월 24일자로 공포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에 의하면,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을 「문고」라고 정의하고 있어 본고에서는 포괄적인 명칭으로 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법률에 기초하지 않고 설립 운영되는 소규모 도서관으로서의 문고는 그 명칭이 어떠하던 간에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현상은 아니며, 세계 여러나라에서 그리고 과거부터 있어왔던 도서관운동의 한 형태이다. 어느사회에 문고의 형태가 생겼던 배경을 살펴 보면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공공도서관이 탄생되기 이전에, 대중들이 자신들을 위한 스스로의 도서관을 만들어 나갔던 형태이다. 도서관의 역사를 볼 때, 18세기까지는 서민대중이 도서관이나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다. 과거시대의 도서관은 대부분 귀족, 성직자, 학자, 부호 등 특수 지배층의 전유물이었기에 일반 대중은 지식정보에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다. 그런데 정치, 사회, 경제적인 발달에 힘입어 민권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18세기경부터 선진국에서는 서민대중들이 중심이 되어 스스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도서관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18~19세기 경에 활발하였던 영국과 미국의 회원제도서관, 기술공 도서관, 도제도서관, 청소년도서관 등이 그러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후 이러한 소규모 도서관운동은 각 지역, 각 직장 단위로 번져나가 대중의 큰 호응을 받게 되었으며, 후일 공공도서관법제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대중이 이용할 공공도서관이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그 수효가 부족하고 봉사내용이 부실하여 주민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욕구에 대한 갈증을 메우기 위해 문고가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형태이다. 근래 우리나라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문고 또는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의 도서관운동은 대체

로 후자의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소규모 도서관으로서의 문고운동은 공공도서관 입장에 있어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용자에게 자료와 정보를 연결시켜 주는 도서관의 기본 기능은 도서관 규모의 크고 작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도서관의 규모가 크면 그 봉사의 내용이나 질이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서간은 꼭 대규모 도서관만을 지향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도서관은 큰 규모의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주민이 가까이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의 도서관이 마을마다 곳곳에 필요하다. 독서습관이나 도서관 이용습관이 적을수록 그러하다. 훌륭한 시설과 규모를 갖춘 어린이 대공원도 물론 있어야겠지만, 어린이의 일상생활에는 작은 규모라도 마을마다 골목마다 어린이가 쉽게 뛰어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더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 논리이다. 더구나 공공도서관의 수가 절대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 문고는 공공도서관 부족현상을 메꾸어 줄 뿐만 아니라 아직 도서관과 거리를 느끼고 있는 주민과 도서관 간의 교량 역할을 해 줄 수 있다는 데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2) 문고운동의 현황

우리나라 문고운동에 있어서 큰 출기를 이루어 온 것은 1961년부터 전국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마을문고운동(1983년에 새마을문고로 개칭)이었다. 공공도서관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농어민을 위해 전국 농어촌 이·동 행정 단위에 문고를 설치한 후 주민들로 조직된 문고회가 자율적으로 이를 관리 육성해 나가도록 한 이 운동은, 민간독서운동기구라는 한계에서 야기되는 갖가지 난관 속에 문고의 수는 계속 늘어나 1974년에는 전국적으로 3만 5천여개에 달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들 문고는 그동안 수십 년간 계속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 마을단위문고의 통폐합과 부실문고의 정리 등 여러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80년대 후반부터는 문고의 수가 대폭 축소되어 1993년 말 현재 3,651개에 이르고 있다 (문고당 평균 장서 1,229권, 평균 열람석 28석 보유).

한편 작은도서관이란 이름으로 문고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작은도서관협의회의 발족도 요즈음 시선을 모으고 있다. 서울시립종로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그동안 전개해 왔던 작은도서관갖기운동이 몇몇 민간 독지가의 주도하에 지난 3월 14일 민간단체로 정식 출범되었던 것이다. 현재 각 지역, 직장, 교회 등에 설치되어 있는 670개의 소규모 도서관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이들의 설립취지, 설치장소, 명칭은 매우 다양한 편이며, 아직 구체적인 운영현황이 파악되어 있지는 않다.

3. 연계운동의 필요성 및 그 방안

공공도서관과 문고가 상호협조 체제를 갖추고 연계하여 운영하는 일은 도서관 및 독서운동의 능률극대화를 위해 매우 중요한 바, 구체적인 필요성과 연계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관내 문고의 구심점으로서의 공공도서관

공공도서관이 관내 모든 문고의 구심점 구실을 하면서 관내문고를 공공도서관의 봉사거점(service point)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우리의 공공도서관은 그동안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다수의 도서관이 공부방 구실에 머물러 전체 지역주민에 대한 실제적인 봉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역주민에 대한 광범위한 봉사와 효율적인 독서보급을 위해서는 관외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도서관 산하에 많은 봉사거점을 설치 운영하는 일이다. 봉사거점이 없는 다수의 공공도서관보다는 다양한 봉사거점을 거느린 소수의 도서관이 주민에 대한 실제적인 봉사에 있어 보다 능률적임은 이미 국내외의 많은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즉, 봉사거점을 많이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1개의 도서관으로서 시, 군, 구 관내주민 모두에게 봉사하기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이 관내에 이미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는 문고를 봉사거점으로 활용한다면 도서관이 새로운 봉사거점을 구축하는데 소요되는 노력을 절감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고의 입장에 있어서도 공공도서관을 구심점으로 하여 연계되어야 할 필요성은 마찬가지이다. 한 지역 안에서 산발적으로 흩어져 활동하고 있는 문고들은 어떠한 방법이든 엮어지고 시스템화되어야 능률적일 수 있다. 한 예로, 그동안 마을문고 사업은 민간운동의 계선(系線) 조직(중앙—시도—시군—단위문고)만으로 이를 엮어서 육성해 오려는 독자적인 노력을 30여년간 기울여 왔다. 초창기 마을문고운동이 시작될 때부터 마을문고는 그 지역 공공도서관의 지도, 관장 아래 육성되는 것을 궁극적인 이상으로 삼아왔으나, 당시 도서관계의 인식부족은 물론, 공공도서관의 숫적인 부족과 질적 수준의 미흡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초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그러나 현재의 공공도서관 수준은 과거보다는 향상되어서 이러한 이상을 수용할 만큼은 성장되었다. 뿐만 아니라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지방자치체의 강화현상은 단위 마을문고의 육성을 계속 독자적인 계선조직에만 의존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미 설치된 마을문고 뿐 아니라 앞으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공립 문고까지 설치된다면, 그 지역내의 모든 문고는 지역단위에서 자율적으로 관리·육성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려 할 터인데, 이때 국민독서활동의 중심기관인 지역 공공도서관은 자연히 관내 문고의 구심점이 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관내 문고를 도서관 봉사거점으로 연계 운영하면서, 조건이 성숙된 대형문고는 차차 도서간의 분관으로 편입

시켜 공공도서관시스템을 확장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2) 관내 문고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장서 지원
마을문고를 비롯하여 그동안 여러 형태로 설치 운영되어 오던 문고들은 대체로 규모가 영세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독자적으로 활발한 성장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마을문고를 예로 들어 보자. 마을문고는 농어촌 이·동 행정 단위를 설치대상 단위로 하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관리 육성하는 시설인데, 농촌인구의 감소와 연령층의 구조변화 등으로 인해 이·동 행정 단위의 독자적인 활동과 지속적인 성장은 점점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사회는 이 운동이 시작된 초창기와 비교해 볼 때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달라졌다. 농촌의 생활권은 광역화되었고 정보량이 폭창되어 출판물의 종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주민의 교육수준은 급격히 향상되었다. 따라서 주민들의 정보욕구는 보다 다양하고 깊어지기 마련이어서, 문고에 소장된 영세한 장서만을 가지고 주민의 욕구를 만족시키란 구조적으로 어렵게 변화된 것이다.

설사 어느 마을의 문고가 특별한 여건으로 인해 만족할만한 많은 장서를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이용자(마을 인구수)는 점점 줄어드는 관계로 장서이용 빈도는 매우 낮아질 수 밖에 없는 만큼, 모든 문고를 일률적으로 많은 장서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은 자원 효용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문고이용 주민의 독서욕구 충족은, 각 마을 문고가 자체적으로 소유한 장서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대출받아 활용 가능한 책을 효율적으로 이용시킴으로써 해결토록 하는데 비중을 두는 것이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이다.

그 방안은 마을문고가 지역 공공도서관의 「기탁소」(deposit station) 역할을 겸하는 것이다. 기탁소(寄託所)란 공공도서관이 원거리 지역의 주민을 위

해 일정량의 도서관 장서(대출문고)를 특정장소에 보내어, 그 장소를 중심으로 이용시키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다른 책으로 교체해 주는 봉사거점이다.

대출문고 비치장소로서의 기탁소는 공공도서관에서 가장 오래된 관외봉사활동의 하나이다. 갖가지 관외봉사활동 중 경비가 가장 적게 들 뿐 아니라 직원의 시간적 소비가 적게 든다는 장점으로 인해 상당한 인기를 누려오던 활동이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경우는 근래에 와서 이동도서관(book mobile)에 밀려 인기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출문고의 적은 책만을 가지고는 주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과, 도서관 직원의 인적지원을 받을 수 없는데다가 기탁소의 자원봉사자 확보와 관리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 등의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진국과는 다른 가능성은 지니고 있다. 우리가 문고를 기탁소로 활용할 경우에는, 문고 자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장서를 보유하고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문고이용 주민은 공공도서관의 대출문고에 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것이기 때문이다. 즉, 공공도서관에서 대출된 책은 문고의 부족한 자체보유 장서를 지원함으로써 문고운영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또는 선진국의 경우 기탁소는 도서관의 요청에 따라 대체로 상점, 공장, 클럽, 단체 등에 설치해 왔는데 반해, 우리의 문고는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생겨 이미 활동하고 있던 것인 만큼 선진국의 기탁소 관리자보다는 봉사의식이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관내 문고에 대한 공공도서관의 전문적 지도 정부 또는 외부로부터 제도적인 예산지원이 없이 자생적으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의 문고에는 근본적으로 상근직원을 두기가 어렵다. 그동안 마을문고의 경우만 보더라고 전담직원을 배치한 문

고는 극소수에 불과하였고, 최근에 시작된 작은도서관협의회 소속 문고들 경우에도 마찬가지 실정이다. 또한 전국적인 방대한 문고를 지도 육성하기 위한 전문인 중심의 지도조직을 최소한 시, 군, 구 단위에 별도로 두고 유지하기도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개개 문고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도서선택, 정리, 독서지도, 프로그램봉사 등 전문직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공공도서관의 전문인력이 관외봉사 차원에서 관내의 문고의 전반적인 운영을 지도하는 일이다. 이러한 역할은 관내문고를 활성화한다는 효과 뿐 아니라, 문고 이용자로 하여금 장차 공공도서관의 수준높은 봉사도 이용토록 홍보하고 유도하는 도서관 마케팅의 차원에서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4. 결 론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과 문고가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상호 발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첫째, 공공도서관이 관내 문고의 구심점으로서 이를 지도,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공도서관의 여건이 보다 완비되어야 하겠다. 여러 문고에 대출문고를 순회시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신간도서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며, 관내 문고의 지도를 비롯해 관외봉사활동을 담당할 전담부서나 전담직원의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의 장서 및 직원기준의 산정요소 중에 지도대상 문고의 수효도 포함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새로 제정된 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립문고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설치할 때는 사전에 그 지역 공공도서관이 문고설치 장소, 규모, 시기 등을 결정도록 하여 완벽한 도서관 봉사망 형성을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장차 규모가 크고 제반조건이 부합되는 문고는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 한데, 사립문고의 경우에는 행정적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으니 사전에 이에 대한 연구가 준비되어야 하겠다.

넷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문고업무를 관장하는 정부부서의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 현재 마을문고는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내무부에서 관장하고 있고, 그 이외의 문고는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합리적인 조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볼 때, 「문고의 설치는 공공도서관을 대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가능해진다. 즉, 정부에서는 공공도서관 설치예산의 절약을 위해 문고를 설치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문고설치는 궁극적으로 공공도서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전체 주민에게 도서관봉사를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차원에서 도서관정책이 출발되어야 할 것이다.